

1. 개정이유

가. '26.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나. 이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신설된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2026. 8. 28. 입법예고)에 규정

다. 위와 같은 법률 및 대통령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도·조언 관련 세부사항 마련)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지도·조언 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송치 시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 표시, ▲ 지도·조언 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의견서 기재 등 관련 세부 규정 및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 마련(제15조~제19조)

나.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구체화)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실시(제5조)

다. (기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 정비)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비하고(「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 등),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9. 22. ~ 9. 29.) 결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10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

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철회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입건 전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

전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입건 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무연수원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공급능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소청 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 공소청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④ 공소청은 법무연수원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6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수색·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

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사경 협력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특사경 협력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제2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검시의 참여)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검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12조(수사개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사경 협력규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사경 협력규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 별로,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별로 작성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

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증지

제3절 협력 및 지도·조언

제15조(자료의 요청)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사경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기각 결과 포함), 지도·조언 건수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조언의 요청) 특사경 협력규정 제20조, 제21조의 지도·조언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조언) 특사경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의 지도·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조언서에 따른다.

제18조(지도·조언의 기한 준수 등) 특사경 협력규정 제24조제2항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에 따른다.

제19조(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할 경우 지도·조언요청서, 지도·조언서 등 지도·조언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할 경우, 검사의 지도·조언의 이행 여부 등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별지 14호 의견서 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지도·조언 내용
2. 검사의 지도·조언의 이행 여부 및 이행 내용
3.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절 임의수사

제21조(출석요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포함하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사람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

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제25조(조서와 진술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항의 진술조서는 진술을 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진술인이 기재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④ 진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제28호서식(진술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조서에 편철하고, 간인(間印)을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⑤ 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을 원할 때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서면 진술에 동의할 때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7조(사건관계인의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같은 날 여러 명에 대해 출석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또는 강압적

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제28조(조서 및 자료의 편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서, 수사보고서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29조(영상녹화)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제30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고발 사건

제31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保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2조(체포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

당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33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 범죄의 경중·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4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듣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5조(현행범인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6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체포영장

2.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및 제33조제2항의 긴급체포서

3. 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4.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서, 제34조제1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현행범인인수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7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모사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38조(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

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그 등본을 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39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40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제41조(피의자의 석방)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3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보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통보서

제42조(체포·구속장소 점검 관련 조치) 특사경 협력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체포·구속인명부는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일반용):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
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별지 제56호서식의 신청서

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별지 제57호서식의 신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44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의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제45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65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보전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압수조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7조(수색조서의 작성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일시·장소, 참여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색결과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8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증조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압수물의 보관·폐기·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의견요청서
2. 압수물의 대가보관: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서
3. 압수물의 폐기: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의견요청서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133조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하거나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제50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

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 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제51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조사한 후 입건전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공소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5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승인서와 함께 봉인한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특사경 협력규정 제13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53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

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 유예에 대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지 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5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신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전기통

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전조사한 후 입건전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허가서를 청구한 공소청에 집행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8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제5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예했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

조의3제1항에 따른 감정유치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처분허가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감

정처분허가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21조의4제3항에 따라 발부된 감정처분허가장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제61조(영장 등의 반환)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한다.

제62조(증거보전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2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로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증인신문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법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에 따른다.

제64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친고죄의 경우에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을 지났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

제65조(고소의 대리)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66조(고소 등의 취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

1.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소한 경우
2. 고발인이 그 고발을 취소한 경우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등

제67조(범죄수익 몰수·부대보전·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서 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몰수·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을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

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요구에 따라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라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추정보전 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8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국·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입국·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관 절차 특례에 대한 요청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

지 제135호 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 등

제69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고소·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통보 내용, 사진, 별지 제136호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37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록 목록

4.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

5. 그 밖에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각 장마다 2부터 시작하여 2, 3, 4 등으로 면수를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

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70조(의견서 작성) 특사경 협력규정 제31조의 의견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71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특사경 협력규정 제32조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관리부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따른다.

제72조(추가 송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추가 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3조(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사경 협력규정 제34조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피의자가 발견된 경우 및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2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서

2.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43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통보서

② 특사경 협력규정 제34조에 따른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는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수사촉탁)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45호서식의 촉탁서에 수사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나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한다.

②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46호서식의 회답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전부와 함께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제75조(범죄사건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76조(증언 준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면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7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 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직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
11.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12. 별지 제35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
13.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
14.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
15. 별지 제47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
16. 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
17.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
18.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19.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0. 별지 제8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1.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2.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3. 별지 제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4. 별지 제100호서식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5. 별지 제10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26.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27. 별지 제1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8. 별지 제1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29. 별지 제1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0. 별지 제11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1. 별지 제1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 별지 제128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33. 별지 제129호서식의 추정보전 신청부
 34. 별지 제131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5. 별지 제135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
 36. 별지 제144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37. 별지 제147호서식의 범죄사건부
 38. 별지 제148호서식의 압수부
- ② 검사는 제1항 제17호의 체포·구속인명부 및 같은 항 제37호의 범죄사건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를 송부받아 검토하거나 지도·

조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저장·관리·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78조(수사관계예규철) 제77조제1항제1호의 수사관계예규철에는 공소청이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79조(수사종결사건철) 제77조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제80조(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77조제1항제3호의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입건전조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81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제77조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제82조(통계철) 제77조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83조(처분결과통지서철) 제77조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기소중지·참고인증지·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제84조(잡서류철) 제77조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제85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를 철한 후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제86조(임의장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7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87조(장부 등의 갱신) ① 특별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 구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제88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제77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제77조제1항제1호: 영구
2. 제7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호 및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25년
3. 제77조제1항제6호: 5년

4. 제77조제1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3년

5. 제77조제1항제7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 2년

제89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88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 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정 전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주 요			
진 행 상 황			
담 당 자	☎ 02-0000-0000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관할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에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기 관 명)

수 신 (기관명)

제 목 변호인·변호사 참여신청

아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 _____에 대한 (신문·조사) 시 변호인 [변호사 또는 (피해자·참고인) _____의 변호사] _____의 (신문·조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피혐의자)	사건번호 및 죄명	
	성명	
피해자 (참고인)	성명	(피해자/참고인 조사 참여 신청 시에만 기재)
변호인 (변호사)	의뢰인 성명	피의자/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변호인선임서	이미 제출() 첨부()

20

신청인: 변호인(변호사·피의자·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 ○ ○ ○ ㉠

지 정			
대표번호인 지정의 철회 서			
지정의 변경			
피 의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대표번호인을 지정함 아래 대표번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대표번호인의 지정을 변경함 . 피의자 (인)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대 표 번 호 인	1	성	명
		송 달 주 소	
	2	성	명
		송 달 주 소	
	3	성	명
		송 달 주 소	
기 타 번 호 인	1	성	명
		송 달 주 소	
	2	성	명
		송 달 주 소	
	3	성	명
		송 달 주 소	
	4	성	명
		송 달 주 소	
	5	성	명
		송 달 주 소	

○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수 신

참 조

제 목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한자) : 직업
주민등록번호 : - 00세
주 거:
등록기준지: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채	일시

○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공소청의 장

제 목 :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발	견	일	시	
발	견	장	소	
신	고	일	시	
변 종	사 별	원	인	
		방	법	
변 인	사 적	자 사	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발 인	견 적	자 사	향	성 명 :
				직 업 :
				주 거 :
				변사자와관계 :
발 견 경 위				

피 의 자 (피 혐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사 인 및 의 사 소 견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			
사망추정시각				
사 체 의 상 황 (위 치, 착 의, 외상 유무등사체의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증 거 품 (소품형범행공물 , 유서, 일지등 존재 사항) 및 참 고 사 항				
유 족 의 진 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관계인진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사 건 개 요				
조치 및 의견				
담당특별 사법경찰관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검 시 조 서		
년 월 일 지방공소청 검사 의 명에 의하여 특별 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 의 변사자(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하여 이를 검사한다.		
변사자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 체 의 모 양 및 상 황		
변 사 연 월 일 시		년 월 일: 경
사 인		
발 견 일 시 및 발 견 자		년 월 일: 경
의사의 검안 및 관계인의 진술		
소지금품 및 유류품		
사체 및 휴대품의 처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시는 년 월 일에 시작하여 년 월 일에 끝나다.		
년 월 일 ○ ○ 교 도 소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검 증 조 서

특별사법경찰관 성명은 0000.00.00. 특별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000외 0명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증은 0000. 00. 00. 00:00에 시작하여 0000. 00. 00. 00:00에 끝나다.

0000.00.00.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성명 ①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①인

(기 관 명)

제 호

의
아
도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수사개시 통보

다음 사람에게 대한
이름 통보합니다.

피의사건을 수사개시하였으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 거

등록기준지

범 죄 사 실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 사안
인지 여부 기재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	
다음 사람에게 대한 직무범위 외 범죄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범 죄 사 실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사안인지 여부 기재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 ○ ○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사	-
수신자	경찰청장
참 조	과학수사분석과장
제 목	수사자료표 송부
발신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原) 지문		⑧	⑨
작 성 번 호	작 성 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죄 명	입건전력 발견여부	작성 여부		조회일 및 처리일	조 회 사 유
						모든 손가락	엄지 손가락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지도·조언 요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요청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번	건 호
죄 명	
피 의 자	
지도·조언 요청 사항	
비고	이미 검사의 지도·조언이 있었던 경우 해당 검사 성명 및 지도·조언일 기재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①	

○○지방공소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기관명)	
제 목 지도·조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3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합니다.	
사 건 번 호 (영 장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지도·조언 사항	
지도·조언 이행기한	
○○지방공소청	
검사 ○○ 인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이행 기한 연장 요청	
아래 사건에 대하여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지도·조언 요지	검사의 지도·조언 이행 기한: 0000.00.00. 지도·조언의 요지:
수 사 진 행 내 역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	

(기 관 명)	
제 호	.
수 신	○○지방공소청 검사 발 신
제 목	의견서 특별사법경찰관
피 의 자	
죄 명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	
전 과 및 검 찰 · 공 소 청 처 분 관 계	
지 도 · 조 언	유[] 지도 · 조언일 0000.00.00. 지도 · 조언검사 000 이행[] 무[]
의 견	

제 0000-00000 호 ...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출국정지·입국 시 통보 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	건	번	호
인적 사항	성	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직	업	성 별
	여	권	번 호
죄		명	
범 죄 사 실			
사		유	
기		간	
비		고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인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고소인 , 고발인 , 진정인)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사실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
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
한 점이 있으면, ○○과(전화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담당자

①

②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기관명)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 1.
- 2.
-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
계 전화(-)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담당자

인
인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출 석 요 구 일 시	출 석 자		사건번호	출석요구통지		결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성 명		통지일	방법		

297mm×210mm[백상지(80g/㎡)]

작성요령

- 구분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
- 방법란: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
- 결과란: 출석일시 및 조사여부를 기재

동 석 신 청 서 (피의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뢰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귀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위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동 석 신 청 서 (피해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전화번호		
신뢰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귀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한 피해 자 에 대한 조사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3.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이유	
4.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 중단 시각: □ 재개 시각: □ 이유:
5.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종료시각:
6.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특별사법경찰관 : ㉡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관 련 사 건	피 의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조 사 자 . 피 면 담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건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수 사 경 과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장소 떠난 시각	
	조서 미작성 이유	
	조사 외 실시 활동	
	변호인 참여 여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피조사(면담)자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피조사(면담)자로부터 확인받음. 년 월 일 확인자 인 특별사법경찰관 인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e-mail)

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 회)

피의자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직 장 주 소				
연 락 처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답

진 술 조 서 (제 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illegible]

문답문답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준 바	
·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진술자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①
특별사법경찰리		①

통역인을 통하여 본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읽어준 바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통역인					
	진술자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진 술 서					
성 명	()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통 반)	자택번호		직장번호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 제출합니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진술자

①

영 상 녹 화 동 의 서

(기관명)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인

(마지막쪽)

이 실태조사는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권 리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인수)·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인수)·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인수)·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기관명)

(직급) ㉠

체 포 · 구 속 영 장 집 행 원 부

[illegible]

(기 관 명)

제 호 년 일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체포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및 체 포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 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 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체포영장청구		
위와 같이 체포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체 포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일 자		. . . 시 분	. . . 시 분
신 청 자 직 급 및 성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재 신 청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집 행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장 소		
	처 리 결 과		
구속 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긴 급 체 포 서	
피의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번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별지와 같음
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석 방 사 항	
석방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석방한 장소	
석방 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필요 [] 기타()
석방한 자의 직급 및 성명	

긴 급 체 포 원 부

집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 . .	. . .
긴 급 체 포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검 사 지 휘	승인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석 방	일 시		
	사 유		
구 속 영 장 신 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긴급체포승인요청 특별사법경찰관 ㉠				검 사 결 정		
				년 월 일		
				가	부	비고
다음 사람에게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 으니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등록기준지					
긴급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범죄 사실						
소명 자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번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①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현행범인인수서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번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위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①		
체포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인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수한 장소		
인치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년 월 일 시 분
구금한 장소		

(기 관 명)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피의자 석방 통보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구	분	
영 장 발 부	연 월 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인수)서		
작 성	연 월 일	
체 포 · 구 속 영 장	번 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인수)서		
작 성	번 호	
피 체 포 · 구 속 자		
죄	명	
석 방 일 시		
석 방 사 유		

특별사법경찰관

인

현행범인체포원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작성일					
현행범인체포 및 인수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또는 직급			
	인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수한 장소				
	인수한자	직급			
		성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석방	일시		. . . 시 분	
사유					
구속영장 신청	신청부 번호				
	발부연월일		. . .		. . .
비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여 에 구속하려고,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①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여, 에 구속하려고,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번호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에 구속하려고,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 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 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에 구속하려고,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구속영장청구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구 속 영 장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 형제 호		
주 임 검 사					
신 청 관 서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체 포 일 시 및 유 형		시 분	시 분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진행번호)	체포(진행번호)		
영 장 신 청 및 발 부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재 신 청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신 청	. . . 시 분	. . . 시 분	
		검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판 사 기 각	. . . 시 분	. . . 시 분	
		발 부	. . . 시 분	. . . 시 분	
		피 의 자 심 문	신청인		
			일련번호		
	검사 또는 판사 성명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접수자 직급 성명				
		구 인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유 효 기 간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구속 통지 등

1. 피의자

성 명:

생년월일: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음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통
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체 포 · 구 속 영 장 등 본 교 부 대 장

집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피의자와의관계		
피 의 자			
죄 명			
체 포 · 구 속 일 자		. . .	. . .
접 수 연 월 일		. . .	. . .
교 부 허 가		. . .	. . .
교 부 불 허 가		. . .	. . .
수 령 연 월 일		. . .	. . .
청 구 인 의 서 명 또 는 날 인			
비 고			

임치증명서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임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 호	물 건	수 량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임 치 및 급 식 상 황 표

임 치 금						
임 치 물 품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급 식 상 황	일 자	1	2	3	4	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6	7	8	9	1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1	12	13	14	1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6	17	18	19	2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1	22	23	24	2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6	27	28	29	30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31

물 품 차 입 부

유 치 인 성 명					
차 입 자	주 거				
	성 명				
유치인과의 관계					
구 별					
연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물 품 및 수 량					
비 고					
취 급 자					

(기 관 명)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 통보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첨부: 긴급체포서 사본 1부

① 긴급체포 연월일	② 피긴급 체포자	③ 죄 명	④ 긴급체포 일시·장소·사유	⑤ 석 방 연월일	⑥ 석 방 사 유
. . .			긴급체포서 사본참조	. . .	긴급체포서 사본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공 소 청
(○○○○ - ○○○○)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위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지 방 공 소 청
검 사 ○○○ ㉠

체 포 · 구 속 인 명 부

제 호									
체 포 · 구 속	취급자	계장		과장		기관장			
	연월일 및 유형		년	월	일: 체포영장				
			년	월	일: 긴급체포				
			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일: 구속영장				
석 방	취급자	계장		과장		기관장			
	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유								
죄명 및 형명·형기									
인 상	키		몸집		머리털		눈썹		
	수염		이마		귀		눈		
	입		이		코		용모		
	얼굴		얼굴색						
	기타 특징								
착의									
체 포 · 구 속 된 사람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전과, 죄명, 범수									
공범 관계자 성명									
가족관계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일반용)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게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번호인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인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게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고 하므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번호인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피의자 본인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 · 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지 방 공 소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금융계좌 추적용)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 사		인
기 각 취 지 및 이 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변호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직급·성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급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위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압 수 · 수 색 · 검 증 영 장 신 청 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명			
검사기각		. . .	. . .
판사기각		. . .	. . .
발부		. . .	. . .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 . .
	장소		
	처리결과		
비고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기관명) 형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폐기 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 대상 전자정보

사건번호	형제 호	지원번호	지원 호
주임검사		압수일시	. . .
압수장소			
압수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또는 반환 대상 확인

(삭제·폐기) []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남겨진 전자정보

(매체 반환) []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내 전자정보
[] 피압수자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확인

전자정보	
일시	. . . 00:00경
장소	
삭제·폐기 방법	
특별사법경찰관 ○○○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 ○○○	

■ 반환 확인

전자정보(매체)		
일시	0000. 0. 0. 00:00경	
장소		
수령자	(성명)	(연락처)
특별사법경찰관은 ○○○은 반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복제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였음		
확인자: 특별사법경찰관 ○○○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건번호	2019지원0000_1호_○○주식회사
증거번호	증1호 홍길동(대표이사)의 노트북
압수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 용 자	홍길동
조 사 자	조사자
이미지 파일 생성일시	2019. 01. 01. 00:00:00
이미지 파일명	증1호_홍길동(대표이사)_노트북.dd

해시값

이미지파일	
-------	--

※ 해시값(Hash Value):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해시함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길이를 가진 값을 출력하며, 입력이 다른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관	위와 같이 복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참관하겠습니다.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참관 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등: (서명)

특별사법경찰관: (서명)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기기의 종류 등	기기의 종류: 제조사 및 모델 (S/N): (모바일의 경우) 전화번호:					
참관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복사,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참관하겠습니다.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참관 희망시	참관 범위	• 정보저장매체 복사 및 이미지 파 [] 일 변환·생성(이미징) • 전자정보 탐색 및 복제(출력) []			
		참관 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 기기의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등의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내부 전자회로 직접 연결(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 기기의 복사 및 이미지 파일 변환·생성(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등을 한 이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 될 가능성이 있음 -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3%;">보안폴더 []</td> <td style="width: 33%;">삼성페이 []</td> <td style="width: 33%;">기타 ()</td> </tr> </table>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피압수자가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화면잠금번호(4자리 이상 숫자): 1234 ☐ 비밀번호(4자리 이상 문자 또는 숫자): spo1234 ☐ 패턴: 0-1-2-5-8 ☐ 백업데이터 비밀번호: 123456				보안폴더 []	삼성페이 []	기타 ()
보안폴더 []	삼성페이 []	기타 ()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피압수자, 임의제출자 등: (서명) 특별사법경찰관: (서명)						

기관명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기관명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요 청 사 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 / 외국의 보전요청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공조 이행을 위해 필요
대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
필요한 정보의 범위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전대상 전자정보와 관련성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보 전 요 청 기 간	조치일부터 XX일(60일 이내)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 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
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기관명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수신: △△△지방공소청

발신: 기관명

제 목: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합니다.

보전된 전자정보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전 연장 요청 기간	집행일부터 xx일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별지 1】

보전된 전자정보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1234@*****.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abcd@*****.com에 대한 가입자 정보, 계정 보안 정보, 접속기록, 기기 정보 등
- 보전요청 일자 : 20XX. XX. XX.
- 보전요청 기간 : 00일

【별지 2】

보전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
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 기간 연장 필요 사유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 . .
대상 전자정보		. . .	. . .
보전요청기간		. . .	. . .
검사기각		. . .	. . .
처리결과통보		. . .	. . .
보전요청취소	일시		
	사유		
보전기간연장	일시		
	연장기간		
비고			

기관명

진행번호: 20XX보전XX호 0000. 00. 00.

수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신: 기관명

제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을 요청합니다.

대상 사건	20XX-XXX호 000위반
요청 사유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미리 검사에게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필요한 정보의 범위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음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음
보전요청 기간	조치일부터 XX일(60일 이내)
비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 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의 이메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 정보 등
- 접속기록 : [UTC+9] 20XX. X. X. xx:xx부터 20XX. X. X. xx:xx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XX. X. X. xx:xx[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기관명

검사결정		
. . .		
가	부	비고

제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의 사건명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승인 대상 보전요청	20XX보전XX호
긴급보전요청 일시	
긴급보전요청한 전자정보	
범죄사실 및 긴급보전요청 사유	
긴급보전요청한 자의 직급 및 성명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제호	년제호
요청연월일			
요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 .
대상 전자정보		. . .	. . .
보전요청기간		. . .	. . .
처리결과통보		. . .	. . .
검사결정	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보전요청취소	일시		
	사유		
보전기간연장	일시		
	연장기간		
비고			

기 관 명

진행번호: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기관명

제 목: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사 유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기 관 명

진행번호: 20XX보전취소XX호

0000. 00. 00.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발 신: 기관명

제 목 :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합니다.

대 상 사 건	20XX-XXX호 000위반
취 소 대 상 보 전 요 청	20XX보전XX호(20XX. X. X. 보전요청)
취 소 범 위	전부 / 일부 (일부 취소 범위 기재)
비 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 조치, 보전요청 취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

특별사법경찰리 ㉠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경찰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수 색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와(과) 아래 사람 (들)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수색한 신체 개소, 물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년	월 일
		종료	년	월 일
참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수 색 결 과 증 명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
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이 검증은 년 월 일 : 에 시작하여
년 월 일 : 에 끝나다.

년 월 일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

(기 관 명)				검사의견		
				. . .		
				가	부	비고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압수물환부(가환부) 의견 요청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다음과 같이 환부(가환부)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피 압 수 자	환부받을 사람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기 관 명)			검사의견		
			. . .		
제 호	년 월 일		가	부	비고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 보관의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년 호(압수번호)		년 월 일			
수 신	○○특별사법경찰관	죄명		담당자인	
제 목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피의자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압수물건으로 보관 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번 호	품 종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폐 기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특별				
사법경찰관 는 특별사법경찰리 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 호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허가 신청을 합니다.				
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항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여러 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지방법원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피의사건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연장할 기간	. . .부터 . .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지방공소청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명					
종류·방법					
처분대상·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					
허가기간·집행장소					
연장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가 신청 및 발부	구분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신청				
	발부				
	기각				
	재신청				
	발부				
	기각				
	수령연월일				
	수령자의 직급 성명·날인				
검찰반환연월일					
비고					

(기 관 명) (전화번호)		검사지휘		
		가	부	비고
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부터 . 까지		
		2. 집행장소: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특별사법경찰관 ㉠		검사승인	
		가	부 비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부터 . . .까지 2.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사유		1. 혐의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사전지휘를 받지 못한 사유			

긴급검열(감청)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부터까지 2. 집행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별지와 같음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대 장

[illegible]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통신제한허가 신청을 합니다.				
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항	주 거		직 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직급·성명				
수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지방공소청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특별사법경찰관 ①인		
아래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비 고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기 관 명)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①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연 장 한 기 간		. . .부터 . . .까지
붙 임 : 통신제한조치연장허가 결정문 사본 1통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경위
5. 집행위탁 여부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기 관 명) (전화번호)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통보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				
하고 그 입건전조사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입건전조사 사실: 별지와 같음 피의				
처리내용				

(기 관 명) (전화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 특별사법경찰관 ㉠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할 필요가 없어 통지하므로,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 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 허가연월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번호		
비 고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귀 하 발 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	
우리○○○○(기관명)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가서번호	
통신제한조치집행기관	
전기통신의 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기간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통지부

[illegible]

(기 관 명) (전화번호)		지방공소청장 승인	
		. . .	
		가	부
제 호 . . .			
수신 ○○지방공소청		발신	
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 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항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검사의견		○○지방공소청 검사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신		○○지방공소청		발신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지유예 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기 관 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귀하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영 장 번 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과 범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기 간	

210mm×297mm[백상지(80g/㎡)]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illegible]210mm×297mm[백상지(80 g / m²)]

○ ○ ○ (기 관 명)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지방공소청		발 신: ○○○(기관명)	
제 목 :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 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건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집 행 종 료 일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경 위			
취 득 한 결 과 의 요 지			
혐 의 사 실 의 요 지 및 승 인 청 구 이 유	1. 혐의사실의요지: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별지와 같음		
보관 등이 필요한 전 기 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 관 등 이 필 요 한 전 기 통 신 의 목 록	별지와 같음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 통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직 급 · 성 명			
재 청구의 취지 및 이 유			
기 각 하는 취지 및 이 유		검 사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신청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 임 : 허가서 1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별첨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특별사법경찰리 (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		
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허 가 법 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의 종 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허 가 연 월 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허 가 서 번 호		
비 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지방공소청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 (입건전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입건전조사) 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처리내용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수 신 ○○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특별사법경찰관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인 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항	주 거		직 업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공소청			
수 신		지방법원(지원)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허 가 신 청 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종 류				
죄 명				
대상 및 범위				
긴급으로 자료를 제공 받은 일시				
신청 및 발부 일시	구 분	허 가	허 가	허 가
	신 청			
	발 부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기 각			
수령 및 반환	수 령 연 월 일			
	수령자의 직급 · 성 명 · 날 인			
	검찰반환연월일			
비 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신	발 신
제 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 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전기통신사업자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공소청				
수신		지방법원(지원)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사후)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수 신	귀하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우리○○○○(기관명)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범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illegible]210mm×297mm[백상지(80g/m²)]

(기 관 명) (전화번호)		지방공소청장 승인	
		· · ·	
		가	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 료 의 범 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 리 일 자 및 결 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 는 사 유		별지와 같음	
검 사 의 건		· · · ○○지방공소청 검사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illegible]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 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통보합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통지유예승인일자				
통 지 일 자				
붙 임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감정유치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 하려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변호인			
범죄 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 . .부터 . . .까지(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	성명		
	직업		
○○ 지방 공 소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감정유치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유치장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지방 공 소 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감 정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감정위촉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정 장소		
범죄의 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호인		
비고		
○○ 지방 공 소 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감정처분허가장청구	
위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감정처분 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지방 공 소 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수 신	
제 목	
발 신	
특별사법경찰관	
년 월 일	
인	
감정위촉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기 관 명)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제 목 감정위촉	특별사법경찰관 ①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첨 부 : 감정처분허가장 1통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영장반환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죄 명		
집 행 불 능 등 영 장 반 환 사 유		
첨 부 : 영장 통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㉞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증거보전 신청서	특별사법경찰관 ㉠
다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건번호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증거보전청구	
위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증인신문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합니다.		
증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 거 신 문 청 구 의 요 건 이 되 는 사 실		
변 호 인		
○○지방공소청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제목	증인신문청구	
위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지방공소청 검사 ㉠		
기각취지 및 이유		

○ ○ ○ (기 관 명)

제 0000-00000 호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몰수·부대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몰 수 ·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 의 성명·주소와 채권 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 주 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 지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 유		
부대 보전 관계	몰 수 보 전 사 건 의 표 시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 지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제2항에 따른 몰수·부대보전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 ○○ ㉠			

○○○(기관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추징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 청구를 신청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추징보전의 근거법령 조 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추 징 보 전 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 ○○		
㉠		

물 수 · 부 대 보 전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성 명		
죄 명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 건 명		
검 사		
신 청 관 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권리		
물수보전사건의 표시		
특별사법 경찰관 신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검 사 청 구	청 구 일	. . .
	결 정 일	. . .
	요 지	
특별사법 경찰관 신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검 재 청 구	청 구 일	. . .
	결 정 일	. . .
	요 지	
결 정 문 수 령 일		
수 령 자 의 직 급 · 성 명 · 날 인		
항 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재 항 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종 국 연 월 일		
물수·부대보전부 번호	물수 년 제 호 부대	물수 년 제 호 부대
비 고		

추 정 보 전 신 청 부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성 명		
죄 명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 건 명		
검 사		
신 청 관 서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 권 리		
추 정 보 전 액	원	원
추 정 보 전 사 건 의 표 시		
특 사 법 경 찰 관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검 사 청 구	청 구 일	. . .
	결 정 일	. . .
	요 지	
특 사 법 경 찰 관 재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검 재 청 구	청 구 일	. . .
	결 정 일	. . .
	요 지	
결 정 문 수 령 일	. . .	. . .
수 령 자 의 직 급 • 인 성 명 • 날		
항 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재 항 고	제 기 일	
	결 정 일	
	요 지	
종 국 연 월 일	. . .	. . .
추 정 보 전 부 번 호	추 정 년 제 호	추 정 년 제 호
비 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를 합니다.

○○○(기관명)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	
아래와 같이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추 정 보 전 사 건 의 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년 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취 소 대 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 부 취 소 의 범 위	(기존 추정보전액: 원) 취소신청 추정보전액: 원 잔여 추정보전액: 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에 따른 취소 사유	
○○○○○○○○	
특별사법경찰관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를 합니다.

추 정 보 전 명 령 취 소 신 청 부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성명			
최명			
사건번호		년형제 호	년형제 호
사건명			
검사			
신청관서			
취소대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부취소범위	기준	원	원
	추정보전액		
	취소신청	원	원
	추정보전액		
	잔여추정보전액	원	원
추정보전사건의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 (년제 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 (년제 호)
특별 사법경찰관 신청	신청일	. . .	. . .
	기각일	. . .	. . .
검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요지		
특별 사법경찰관 재신청	신청일	. . .	. . .
	기각일	. . .	. . .
검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요지		
결정문수령일		. . .	. . .
수령자의직급·인명			
종국연월일		. . .	. . .
비고			

○○○(기관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입국 · 상륙 허가 요청의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 · 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입국 · 상륙 허가 요청을 신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 방지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 체제의 상황			
비 고			

○○○(기관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

제 목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를 신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입 국 (상 룝) 허 가 일 자						
비 고						

○○○(기관명)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지방공소청

발 신

제 목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

특별사법경찰관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차의 특례조치 요청을 신청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마약류의 분산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특 레 조 치 등 신 청 부 (0 0 0 0 - 0 0 0 0 0 0)

입국·상륙 허가 요청 및 체류 부적당 통보 관련					세 관 요 청 관 련			
대상자	성 명				마 약 류			
	생년월일	. . . (세)	성 별	남·여				
	국 적							
요청 관련	신 청	신 청 일	. . .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	
	검사요청· 허가	요 청 일			재 신 청	신 청 일	. . .	
		허 가 일	※ 불허 시 불허일 기재			기 각 일	. . .	
	재 신 청	신 청 일	. . .		재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	
	요청 및 허가	요 청 일			검사요청	요청일		
		허 가 일	※ 불허 시 불허일 기재			세관 조치	※ 일자 및 내용	
	통보 관련	신 청	신 청 일	. . .			비 고	
			기 각 일	. . .				
검사통보		통 보 일	. . .					
		처리결과	. . .					
비 고								

인 상 서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신 장		얼 굴		머리모양		
머 리 색		눈 씹		귀		
눈		입		이		
음 성		수 염		몸 집		
특 징						
도주 당시의 옷						
휴 대 품						
배회 또는 잠복할만한 장소						
비 고						
년 월 일 (기관명) 특별사법경찰관 ㉠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장			
제 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죄명				
수사단서	인지, 고소, 고발, 자수		수리전산입력	
사건번호				
체 포 · 구 속	. . .			
석 방	. . .			
결정일	. . .			
의견				
지도 · 조언	유[] 지도 · 조언일 0000.00.00. 지도 · 조언검사 000 이행[] 무[]			
증거품				
비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압수물총목록

참 고 인 등 소 재 수 사 관 리 부

사건번호		송치일자		조사담당자		과 장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장
	성별 및 연령	남 · 여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기타참고사항					
형 제 번 호	형제 호			주임검사		
결 정 일 자				공소시효		
소 재 수 사 요 청						
요 청 일 자	요 청 관 서	통 보 일 자		통 보 내 용	확 인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추가 송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이 전 에 송 치 한 사 건 명		
송 치 연 월 일	년 월 일	
사 건 번 호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통보			
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송치연월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제 호
발 건 경 위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공소청			
제 목	참고인 등 소재발견통보			
귀청 형제 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 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전 화	(자택)	(직장)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연 월 일		년 월 일	사건번호	제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1. 소재수사통보서 부 2. 진술조서 부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				

피 의 자 등 소 재 발 견 처 리 부			
순 번	1	2	3
피 의 자 또 는 참 고 인			
소재발견일자			
소재발견사유 (검거, 재기신청)			
소재발견 통보일			
죄 명			
수 배 해 제 일 자			
재 기 전 사건 번호			
송 치 일 (송 치 의 견)			
담 당 자			
비 고			

촉탁서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촉탁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년 제 호
피 의 자	
죄 명	
촉탁 사항	
비 고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회 답 서

(기 관 명)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회 답			
제 호(년 월 일)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기 관 명)			
특별사법경찰관			
인			

범 죄 사 건 부

사 건 번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 리		. . . :	. . . :
구 분		고소 · 고발 · 자수 · 신고 · 현행범 기타	고소 · 고발 · 자수 · 신고 · 현행범 기타
수 사 담 당 자			
피 의 자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남 · 여)	(남 · 여)
	직 업 주 거		
조 회		컴퓨터 · 지문 · 사진 · 수법 · 지명 기타	컴퓨터 · 지문 · 사진 · 수법 · 지명 기타
죄 명	수 리		
	송 치		
범 죄	일 시	. . . :	. . . :
	장 소		
피 해 정 도			
피 해 자			
체 포 · 구 속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		
	인치구금		
석방일시 및 사유			
송 치	연 월 일	. . .	. . .
	번 호	제 호	제 호
	의 견		
압 수 번 호		압제 호	압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 사 처 분	연 월 일	. . .	. . .
	요 지		
판 결	연 월 일	. . .	. . .
	요 지		
비 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